

## 발신기관명

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 
(경유)

제 목 **별점 총괄표(건설사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,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건축사사무소 개설자) 통보**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.

(      년도   반기)

업체명 (대표자)	① 법인 (주민) 등록번호	② 업무 영역	공사명 또는 용역명	③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(백만원)	④ 공사 (용역) 기간 (연월일)	점검 기간 (연월일)	⑤ 점검 종류	⑥ 부실 내용 (번호)	별점	부과일 (연월일)	⑦ 별점 합계	⑧ 점검수 합계

끝.

발신기관의 장

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	
시행	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
우		주소			/ 홈페이지 주소	
전화( )		전송( )		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/ 공개구분

### 작성방법

- ①란의 법인(주민)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,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, 주택건설등록업, 건축사업, 측량업,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 등) 중 하나를 적습니다.
-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(용역)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.
-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·감사원감사·자체감사·시공실태점검·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.
- ⑥란의 부실내용(번호)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.
- ⑦란의 별점합계는 해당 공사(용역) 업체의 별점 합계를 적습니다.
-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(별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).
- 과명, 과장,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.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